

심판위원회 규정

제 정 2014. 5. 30
개 정 2017. 1. 21

심판위원회 규정

(사)대한철인3종협회

제 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대한철인3종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 정관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며, 그 명칭은 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심판이 스포츠의 기본 정신과 책임감을 갖고 경기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심판으로서의 역할, 임무,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경기진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위원회, 및 본 협회에서 자격 취득한 등록 심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 본 협회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 승인을 받아 심판위원회의 규정을 정하고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과 당해 단체 규정이 상이할 경우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심판이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심판의 권익 보호(중진)에 관한 사항
3. 심판양성 교육(심판 아카데미)에 관한 사항
4. 심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심판 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제5조(구성) □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3인 이내
 3. 위원 11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 협회 정관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항, 제3항, 제4항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2. 동일 대학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3. 경기인 출신자가 재적위원수의 5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지도자로 재직 중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7)
-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협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위촉) □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회장이 위촉한다.

□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7조(위원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8조(임기) □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 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17)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7)
3. 직무대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7)
4. 제13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
5.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10조(회의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1조(의결정족수)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제척 및 회피) □ 위원은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본인이 제1항과 같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피할 수 있다.

제3장 심판 등록 및 관리

제14조(심판등록 구분) □ 본 협회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심판등급을 구분하되, 본 협회의 특성이나 심판분류에 따라 별도의 용어로 분류할 수 있다.

심판 등급 분류

국제심판	국내심판	비고
ITU Community level	3급	국제 Community level과 국내 3급은 동급
ITU Level 1	2급	국제 Level 1와 국내 2급은 동급
ITU Level 2	1급	국제 Level 2와 국내 1급은 동급
ITU Level 3		

□ ITU로부터 심판교육 과정을 2016년 6월 15일자로 공인 받음에 따라 본 협회 심판과정 3급과 2급 심판과정 이수로 ITU Community level과 level 1 심판 자격을 각각 획득하게 된다. (개정, 2017)

제15조(심판등록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본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등에 의하여 제명된 사람 (개정, 2017)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4. 본 협회 정관 제26조제1항 제4호부터 제11호(제9호의 사유를 제외한다)까지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개정, 2017)

제16조(심판등록 및 활동) □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자격을 취득한 후 본연맹이 정한 절차 및 체육회가 운영하는 심판등록관리시스템의 등록 절차에 따라 심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체육회 및 본 연맹의 심판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된 자만이 당해 단체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심판은 가맹단체의 심의를 거쳐 심판등록 변경 절차에 따라 심판등록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기타 심판등록에 관한 사항)

① 체육회는 등록심판의 기본정보, 선수·지도자경력, 심판경력, 교육이수경력, 상벌사항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체육회 규정에 따라 체육회 홈페이지 및 체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또는 자료 요청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심판 활동 실적발급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4장 심판 양성 교육(심판아카데미)

제18조(심판자격 부여) □ 본 협회는 3급 심판과정 2급 심판과정을 ITU규정에 부합하게 실시하고, 상기 과정을 이수한 후 6개월 이내 심판 실습을 이행한 자에 한하여 심판증을 발급한다.

□ 1급은 ITU level 2 과정 이수자에게 부여한다.

③ 2급 이상의 심판자격을 획득한 자는 대한체육회 클린심판 아카데미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19조(심판자격 유효기간) □ 심판자격 유효기간은 심판자격 획득 후 4년이다.

□ 유효기간 종료 후에는 보습교육을 받아 심판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제20조(심판아카데미 운영) □ 심판의 공정성 제고와 자질함양, 인성 교육을 통해 심판 부정, 비리를 일소하여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통합 교육을 실시한다.

□ 심판아카데미 운영은 본 협회 주관으로 시행한다.

③ 등록된 심판은 교육대상이며, 이수 심판에 대해서는 본 협회 역할 분장시, 인센티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④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은 별표와 같이 5개 영역 10개 과목을 기본으로 편성하되, 심판의 수준 및 교육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한다.

2. 강사 구성은 영역별 전문가, 체육행정가, 체육학 전문가, 교육과정 전문가, 사회 저명인사, 체육계 인사, 심판 등으로 초빙한다.

3. 교육 참가 심판에 대하여 심판아카데미 운영 전반에 대하여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개선·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⑤ 교육에 참가한 심판은 본 협회의 운영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⑥ 본 협회는 교육이수자에 대해 이수증을 발급 한다.

제21조(교육실시) ① 본 협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심판에 대한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내용은 집합교육, 보수교육, 강습회, 심판활동과 도덕, 공정한 경기운영과 판정, 심판의 책임감 등 교양 강좌와 규약, 경기규칙, 판정의 이론, 실기 교육 등 당해 단체별 실정에 맞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심판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 심판 강습회 교육 프로그램은 ITU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사용한다.

□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실시하고자 할 때는 ITU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실시한다.

제5장 심판평가 및 배정

제23조(심판평가) □ 본 협회는 심판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본 협회는 상임심판, 가맹단체에 등록하여 당해 연도 경기진행에 참가한 심판에 대하여 등급별로 판정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통해 심판과과를 관리하고 승급이나 배정 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본 협회는 실정에 맞게 지표 등을 매 경기 가능한 20개 이상 항목을 설정하고, 별도의 세칙을 정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그 세칙에는 동료심판, 선수 및 지도자가 평가할 수 있는 다면평가를 반드시 포함한다.

제24조(심판기피 및 제척) ① 본 협회는 대회전에 배정된 심판을 공개하고 선수, 지도자 등이 심판 기피를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요청할 경우 본 연맹 심판위원회에서 그 사유를 심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경기에 관한 심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 지도자의 친인척, 동일 대학 출신은 그 경기에 심판으

로 참여할 수 없다.

제25조(심판배정) □ 본 협회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모든 대회의 심판을 배정하여야 한다.

□ 심판 배정 시 공정성에 문제가 되는 심판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③ 본 협회는 체육회가 승인한 상임심판을 우선 배정한다.

제26조(심판판정) □ 심판은 제2조에 정한 바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은 경기 진행 중 경기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는다.

③ 심판은 경기종료 후 공식 경기기록 등을 기록원과 확인하며, 당해 단체 양식에 따라 경기보고서를 작성하여 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 협회는 국내종합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시 비디오 재 판독 및 최소 3년 이상 영상보관의 의무를 대회요강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상고는 국제연맹 및 해당 단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7조(심판의 품위) ① 심판은 체육회 또는 본 협회에서 발급한 신분증서를 패용하여야 한다.

② 심판은 당해 단체에서 규정한 복장과 장비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심판은 반드시 필요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심판은 본 협회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심판은 오심 및 편파판정에 대하여 본 협회 및 체육회의 법적상벌규정에 따라 징계(문책) 받을 수 있다.

⑥ 심판은 선수·지도자의 팀(단체 등) 입단, 계약 또는 기타 취직의 알선, 협조 등 심판으로서의 직분이나 직무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6장 상벌 및 심판 매뉴얼

제28조(심판의 상벌) ① 심판이 명백한 오심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심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언행을 할 경우 당해 단체 법 제장별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오심 누적 시 심판자격을 강등할 수 있으며, 오심 횟수에 따라 심판자격도 박

탈할 수 있다.

제29조(심판의 포상) ① 심판 평가 및 교육 우수 심판에 대해서는 체육회 등에 표창을 상신하며 심판 승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본 협회에서는 우수 심판에 대해 체육회에 국제기구 연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심판매뉴얼) 본 협회는 심판매뉴얼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7장 심판비 지급(제7장 전체 신설 2017. 1. 21)

제31조(심판비 지급 기준) ① 심판비는 등급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심판은 대회 전날 정오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여 심판회의에 참여해야 한다.

1) 중거리 이하(하프, O2, 표준거리, 스프린트 코스) 대회

직위	심판비
기술감독, 주심, 심판장	120,000원
1급	90,000원
2급	70,000원
3급	50,000원
실습심판	실습 심판의 경우 경기당일 10,000원씩 2식을 제공한다.

2) 장거리 대회

직위	심판비
기술감독, 주심, 심판장	150,000원
1급	135,000원
2급	105,000원
3급	75,000원
실습심판	실습 심판의 경우 경기당일 10,000원씩 2식을 제공한다.

② 식비는 일식에 중거리 이하는 10,000원씩 4식을 제공한다. 장거리의 경우 5식을 제공한다.

제8장 심판강습회 참가비 및 강사비 (제8장 전체 신설 2017. 1. 21)

제32조(심판강습회비) ① 심판강습회 참가비는 다음과 같이 수령한다.

강습회 등급	참가비
2급 강습회	150,000원
3급 강습회	100,000원
보습회	2급 75,000원, 3급 50,000원

제33조(심판강습회 강사비 지급 기준) ① 심판강습회 강사 수당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강습회 등급	강사비
2급 강습회	780,000원(60,000*13시간)
3급 강습회	480,000원(60,000*8시간)

제9장 심판증 발급(제9장 전체 신설 2017. 1. 21)

제34조(심판증 발급) ① 자격증 취득시 무료로 심판증을 발급하나, 회손, 분실 등에 대한 재발급시 20,000원의 발급비를 수령한다.

제10장 심판 배정 (제10장 전체 신설 2017. 1. 21)

제35조(심판 배정 기준) ① 대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판 인력을 구성한다.

구분	인원	자격		
		전국체전 이상	전국대회	지방대회
기술감독	1명	1급 이상	1급 이상	1급 이상
의무감독	1명	의사	의사	의사
주심	1명	1급 이상	1급 이상	1급 이상
심판장	1명	1급 이상	1급 이상	1급 이상
등록 디렉터	1명	사무처	사무처	?
등록 부디렉터	1명	사무처	사무처	?
등록 심판	3명	사무처	사무처	?
기록 디렉터	1명	2급 이상	3급 이상	3급 이상
경기장 통제	1명	2급 이상	2급 이상	3급 이상
수영 디렉터	1명	2급 이상	2급 이상	3급 이상
수영 부디렉터	1명	2급 이상	3급 이상	3급 이상
수영 심판	2명	2급 이상	3급 이상	3급 이상
바둑터 디렉터	1명	2급 이상	2급 이상	3급 이상
바둑터 심판	4명	2급 이상	3급 이상	3급 이상
사이클 디렉터	1명	2급 이상	2급 이상	3급 이상
사이클 부디렉터	1명	2급 이상	3급 이상	3급 이상
사이클 심판	2명	2급 이상	3급 이상	3급 이상
차량 통제(코스상 유영 차량 및 오토바이)	1명	2급 이상	2급 이상	3급 이상
휠스태이션 디렉터	1명	2급 이상	3급 이상	3급 이상
휠스태이션 심판	1명	2급 이상	3급 이상	3급 이상
바켓수 디렉터	1명	2급 이상	3급 이상	3급 이상

달리기 디렉터	1명	2급 이상	2급 이상	3급 이상
달리기 부디렉터	1명	2급 이상	3급 이상	3급 이상
달리기 심판	2명	2급 이상	3급 이상	3급 이상
보급소 디렉터	1명	2급 이상	3급 이상	3급 이상
페널티 디렉터	1명	2급 이상	2급 이상	3급 이상
결승점 디렉터	1명	2급 이상	2급 이상	3급 이상
총	35명			

단 장거리 대회의 경우, 코스에 따라 부별로 심판을 추가할 수 있다.

제11장 심판의 활동 연령(제11장 전체 신설 2017. 1. 21)

제36조(심판의 활동 연령) ① 심판 활동 연령은 만19세 이상부터 65세 이하로 한다.

제12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한철인3종협회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시행하되 첫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임기에 대한 예외) 이 규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정관 부칙 제2조에 따라 새로 선출되는 회장은 임기 시작 직후 심판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구)대한체육회 산하 대한트라이애슬론연맹과 (구)국민생활체육연합회 산하 대한철인삼종연합회가 자격을 부여한 심판자격은 현행대로 유지되나 통합 이후는 본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개정, 2016)